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m ²	대	m ²	대	m ²	옥내: 대	대	
	기계식	대	m ²	대	m ²	대	m ²	옥외: 대		
일괄신고 내용	대수선			위치변경			그 밖의 사항			
공개공지 면적		조경 면적		건축선 후퇴 면적		건축선 후퇴 거리				
m ²		m ²		m ²		m				
지하수위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구조설계 해석법				
G.L. m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지내력기초인 경우) t/m ²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용도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층수		바닥면적 합계(m ²)			

II. 동별 개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 부분만 적습니다.

⑥ 동 고유번호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주/부속 구분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				
			주용도				
			건축주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사무소명(전화번호):			
			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사무소명(전화번호):			
			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등록번호: 회사명(전화번호):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주구조				
			※ ⑩ 내진설계 적용 여부				
			※ ⑪ 내진능력				
			지붕				
			※ 건축면적(m ²)				
			※ 연면적(m ²)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m ²)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차양길이: 기둥과 기둥사이: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m m	보·차양길이: 기둥과 기둥사이: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m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 동 명칭 및 번호 (㉞)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illegible]

㉑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㉒소유자 성명(명칭)	㉓ 소유권 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V. 공동주택 총괄

• ㉔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기재합니다.

최초 입주방식	☐ 분양 ☐ 임대 ☐ 혼합 ☐ 기타		
평면형식	☐ 계단실형 ☐ 복도형		
난방방식	☐ 중앙 집중공급방식 ☐ 개별 기름보일러 ☐ 개별 가스보일러 ☐ 지역난방 ☐ 기타		
취사용 가스시설	☐ 액화석유가스(LPG) ☐ 도시가스 ☐ 기타		
준공예정일		CCTV	개

㉔ 복리시설 분양시설	용 도		면 적(m ²)	개 소
	주민 공동 시설	☐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집		
		☐ 주민운동시설		
		☐ 작은 도서관		
		☐ 기타		
		계		
	☐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시 설 종 류	설 치 현 황	대지 내 현황	대지 외 현황
	※ 전기·도로·상하수도·통신설비·주차장·조경시설·관리사무소·보안등·TV공청시설·비상급수시설·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㉑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 ㉒ 층구분	㉓ 호구분	㉔ 소유자 성명(명칭)	㉕ 소유권 지분	※ ㉖ 구분기호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illegible]

첨부서류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합니다)의 사본[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합니다)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허가권자 확인사항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11조 제1호	1.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않고(사용승인신청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작성방법

- ① : 터파기공사 등 최초로 시작하는 공사 착수일을 적습니다.
- ②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 ③ ~ ⑤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⑥ : 동 고유번호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신고필증)에 적힌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⑦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⑧ ~ ⑩ :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습니다.
- ⑪ :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으로 적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⑫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에 따른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최대지반가속도”를 적습니다.
- ⑬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 | | |
|---------------------------------|---|
| 1. 주요구조부가 고품화합판강구조(PFB)인 건축물 |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
| 3. 주요구조부가 막구조인 건축물 |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구조인 건축물 |
|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
|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 8. 기타 |

9. ⑬ ~ ⑭

작성례 1)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를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 ⑮ :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 ⑯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적습니다.
- ⑰ : 복리시설 전체면적에 대하여 적습니다.
- ⑱ : 전유/공유부분의 구조·용도·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
[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 ⑲ : 전유부분인 경우: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유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그 외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 ⑳ ~ ㉑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교부
신청인(건축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건축허가·신고 부서)						신청인(건축주)		